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야생동물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마련 등 >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381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한 관리 대상에 도로 추가 등	2
2. 야생동물 등의 사고등 발생시 대응 방법 마련	5
※ 참고자료	10
1.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동물 피해 현황	10
2. 동물 찾길 사고(로드킬)에 의한 야생동물 피해 현황	11

I. 제안경위

2026년 1월 28일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발로 인한 인공구조물의 증가, 교통량 증가 및 반려동물 유기 증가 등에 따라 야생동물, 야생화된 동물, 반려동물 등의 인공구조물에서 충돌·추락,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처는 현행법 및 관련 법령에 분산 규정되어 있어 일반 시민들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이에 인공구조물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야생동물 등이 부상을 당하거나 죽음에 이른 경우 사고를 당한 동물등의 종류별, 상태별로 대응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의 효율적인 활용 및 홍보를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보호와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고처리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한 관리 대상에 도로 추가 등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이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는 인공구조물에 ‘도로’를 추가하고, 야생동물 피해에 ‘교통사고’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로 인한 <u>충돌·추락</u>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① ----- ----- ----- ----- ----- -- <u>수로, 도로 등</u> ----- ----- --- <u>충돌·추락·교통사고(이하 “사고등”이라 한다)</u>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야생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

(種)을 말하며,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야생생물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¹⁾).

특히 '22년에는 우리 위원회 의결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도록 하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조항(법 제8조의2)이 신설된 바 있음.

다만, 동물 찾길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조항에 ‘도로’와 ‘교통사고’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관련 사고에 대한 대처 및 예방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²⁾.

이에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이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대상 인공구조물에 ‘도로’를 추가하고, 야생동물 피해에도 ‘교통사고’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해당 유형 사고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1. “야생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등을 파악하여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되는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야생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참고자료2. 동물 찾길 사고(로드킬)에 의한 야생동물 피해 현황>

도로 등으로 인해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³⁾을 고려하여, 동물 찾길 사고 관련 사항은 해당 법에서 입법을 검토 중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⁴⁾.

3)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인·허가등을 할 때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을 조사·연구하여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생태통로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철도 등의 관리주체에게 생태통로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생태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야생생물 서식 중 현황

2.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서식지가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중 현황

3. 차량사고 등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야생생물 중 현황

4. 그 밖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축과의 연결성에 관한 조사

④ 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야생생물의 특성에 따른 생태통로 등의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4)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동물 찾길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유도울타리 등 야생동물 도로침입방지 시설, 표지판 설치, 도로 전광판 홍보 등을 포함한 동물 찾길 사고 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동물 찾길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제12조(추진체계)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립생태원, 도로관리청 등이 공동 협력하며 기관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토교통부 : 동물 찾길 사고 저감대책 수립·조정 총괄

2. 기후에너지환경부 : 동물 찾길 사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저감대책 수립(12월)

3. 국립생태원 : 동물 찾길 사고 다발구간 분류·현장조사·원인진단·저감방안 등 조사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저감대책을 수립하는 해의 8월말까지)

4. 동물 찾길 사고 조사기관 : 동물 찾길 사고 저감대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저감대책을 수립하는 해의 6월말까지)

제13조(저감대책) ① 동물 찾길 사고 저감대책은 매 3년마다 수립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동물 찾길 사고 발생 및 다발 구간 현황

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유도울타리, 표지판 등 관련 시설의 현황

3. 유도울타리 등 야생동물 도로침입 방지시설, 표지판 설치 및 도로전광판 홍보 등 동물 찾길 사고 다발 구간에서의 운전자 주의 안내 방안 등 동물 찾길 사고 저감방안

4. 소요예산, 추진일정 등 추진계획

② 국립생태원은 제12조에 따라 저감방안을 마련할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2조에 따른 국립생태원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는 제12조에 따른 동물 찾길 사고 저감대책 수립·시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야생동물 등의 사고등 발생시 대응 방법 마련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인공구조물에서 사고등을 당한 야생동물 등에 대한 종류별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여 이를 홍보하도록 하고, ②대응방법의 효율적인 활용과 홍보를 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의2(야생동물 등의 사고등 발생시 대응 방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야생동물, 야생화된 동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이 인공구조물에서 사고등을 당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응 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1. 사고등을 당한 동물등의 종류별 대응 방안 2. 사고등을 당한 동물등의 상태별 담당 기관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

현행	개정안
	<u>로 정하는 사항</u> ②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응방법의 효율적인 활용과 홍보를 위하여 이동통신 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u>

현행법은 국가에게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시행 의무를 부과하고, 인공구조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 등으로 하여금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인공구조물 설치·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후부장관과 시·도지사도 하여금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다만, 야생동물 및 야생화된 동물 등이 인공구조물에서 충돌·추락·교통사고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에 대한 종류별 대응방안 및 상태별 담당 기관 등이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반 시민들이 인공구조물에서 사고를 당한 야생동물 등을 발견한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등을 파악하여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되는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야생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로 인한 충돌·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34조의4(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야생동물 질병관리기술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시설(이하 “야생동물 치료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인공구조물에서 사고등을 당한 동물등의 종류별 대응 방안과 상태별 담당 기관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응 방법을 마련하여 이를 홍보하도록 하고,

대응방법의 효율적인 활용과 홍보를 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야생동물 사고등에 대한 효과적 대처와 이를 통한 동물 구조 및 보호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⁶⁾.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 도로 등으로 인해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동물 찾길 사고 관련 사항은 해당 법에서 입법 검토 중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동물 도로(찾길) 사고에 대해서는 「동물 찾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⁷⁾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부상 동물 발

6)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안 제24조제2항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구축·운영할 경우 향후 5년간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로 2027년 1억 7,000만원, 2031년 3,700만원 등 총 3억 5,300만원(연평균 7,06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함.

* 유사사례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구축 중인 iOS 기반 로드킬 정보수집 애플리케이션 ‘굿로드’의 구축·운영 비용을 준용

7) 「동물 찾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동물 찾길 사고 현황 조사, 사체관리, 대책마련 등 동물 찾길 사고 저감대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 찾길 사고”란 야생동물의 갑작스런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견시에는 야생동물 구조·진료기관 등으로 연락하여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체 발견시 법정보호종 사체인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 등과 협의에 따라 처리하며, 일반종 사체와 국립생태원이 인수하지 않은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처리됨⁸⁾⁹⁾.

8) 「동물 찾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제10조(기본원칙) ① 동물 찾길 사고 사체는 조사기관이 「폐기물관리법」의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 사체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모든 사체의 섭취, 판매, 가축 먹이로의 활용은 금지한다.

④ 부상 동물 발견시 야생동물 구조·진료기관 등으로 연락하여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야생동물 구조·진료기관은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 및 치료에 대한 사항을 기록·관리한다.

⑥ 조사기관 및 구조·진료기관은 법정보호종 사체에 대하여 국립생태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1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인계한다. 단, 국립공원공단을 지나는 도로에서 발생한 법정보호종 사체는 제외한다.

제11조(처리절차) 제10조에 따른 동물 찾길 사고 사체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조사기관이 동물 찾길 사고 사진을 동물 찾길 사고 정보시스템에 전송하면 국립생태원에서 법정보호종 여부를 판단하고, 법정보호종인 경우 해당 조사기관에 회신

2. 동물 찾길 사고 사체가 법정보호종인 경우 조사기관은 문화재청,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사체 이관·처리

3. 국립생태원은 동물 찾길 사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립생물자원관,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과 법정보호종의 동물 찾길 사고 발생 상황을 상시 공유

4. 법정보호종이 아닌 일반종의 사체와 국립생태원이 인수하지 않은 법정보호종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기관이 폐기

9) 다만, 동 지침은 ‘일반 국민’이 아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도로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적용되며, 조사기관 또한 도로관리청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동물 찾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조사기관) ① 동물 찾길 사고 조사기관은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으로 하며, 도로관리청은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동물 찾길 사고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도로, 환경, 자원순환(폐기물) 관련 담당부서간 상호 협의하여 동물 찾길 사고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을 지나는 도로는 국립공원공단이 본 지침에 따라 동물 찾길 사고 조사를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물 찾길 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동물 찾길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국립생태원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적정한 저감방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한다.

문 의 처

02)6788-5541

참고1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동물 피해 현황

□ 연도별 발생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4.30. 기준)
충돌	종 수	92	100	97	88	43
	피해 현황 (개체 수)	7,504	10,792	7,326	4,315	735
추락	종 수	-	-	28	24	조사 중
	피해 현황 (개체·흔적 수)	-	-	676	834	조사 중

※ 충돌 자료는 국립생태원이 관리하는 시민조사 플랫폼(네이처링,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조사 미션」)에 기록한 충돌 발견 수치로 지연 기록·데이터 삭제 등으로 연도별 집계가 보고 시점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충돌 피해 추정수와 차이가 있음. 또한 추락 피해 현황은 23년부터 수행한 실태조사 결과임.

□ 야생동물 충돌 및 추락 피해 실태조사('23~'24년)

- (조사 기간) '23.5. ~ '23.12. / '24. 3. ~ '24.12.
- (수행 기관) 국립생태원
- (조사 대상) [충돌] 국·공유 소유 건축물, 투명방음벽 / [추락] 수로
- (조사 방식) 사고 다발구간(구조센터 신고 자료)에 대해 현장 반복 조사(1지점 당 3~10회 조사)를 통해 결과 취합
- '23~'24년 실태조사 결과

구분		2023		2024	
		조사대상	조사결과	조사대상	조사결과
충돌	건축물	10개	24종 133개체	10개	11종 34개체
	방음벽	23개 (3.7km)	24종 375개체	22개 (3.6km)	37종 682개체
추락	중대형 수로	20구역 (65.9km)	84개 흔적 (포유류 81, 파충류 3)	25구역 (64.6km)	465개 흔적 (포유류 30, 양서류 416, 파충류 18, 조류 1)
	소형 수로	20구역 (39.3km)	592개 흔적 (양서류 513, 파충류 19, 포유류 55, 조류 5)	15구역 (35.7km)	369개 흔적 (포유류 130, 양서류 222, 파충류 17)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참고2

동물 찾길 사고(로드킬)에 의한 야생동물 피해 현황

□ 연도별 발생현황

(단위: 건)

구 분	'17	'18	'19	'20	'21	'22	'23	'24
고속국도	1,884	1,629	1,866	1,584	1,194	1,265	1,045	881
일반국도	15,221	15,183	17,502	11,924	13,604	20,883	28,780	27,882
지방도	-	-	1,230	906	3,710	7,494	6,439	9,043
시·군도	-	-	716	689	16,715	30,711	38,432	47,505
기타도로	-	-	83	4	2,038	3,636	4,582	5,851
합 계	17,105	16,812	21,397	15,107	37,261	63,989	79,278	91,162

* '18년까지는 도로관리청 통계자료이며 이후는 국립생태원 동물 찾길 사고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

□ 종별 현황

(단위: 건)

구 분	고라니	너구리	멧돼지	노루	오소리	기타		
						개	고양이	조류 등
2019년	11,638	1,731	315	557	141	1,016	4,661	1,338
2020년	6,864	1,415	134	610	136	654	3,008	2,286
2021년	10,847	2,291	124	872	245	1,605	17,527	3,750
2022년	16,075	3,353	136	967	376	2,257	31,880	8,945
2023년	18,267	4,011	192	968	510	2,575	38,143	14,612
2024년	19,258	5,198	155	1,184	725	3,022	50,589	11,031
합계	82,949	17,999	1,056	5,158	2,133	11,129	145,808	41,962

□ 권역별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서울	7	6	5	1,007	1,576	836	3,437
부산	39	29	5,001	3,142	2,869	4,825	15,905
대구	89	76	63	1,825	2,965	2,616	7,634
인천	10	54	1,490	2,122	2,607	2,294	8,577
광주	5	11	1,744	1,314	2,131	2,426	7,631
대전	63	61	57	1,955	2,270	1,745	6,151
울산	101	123	137	515	1,245	1,165	3,286
세종	395	155	2,086	1,573	1,417	1,885	7,511
경기	2,739	2,578	3,487	18,227	22,153	20,996	70,180
강원	1,400	1,370	3,093	4,336	2,921	7,611	20,731
충북	3,143	2,107	7,435	6,958	6,975	7,929	34,547
충남	5,078	2,527	1,944	6,542	7,100	8,030	31,221
전북	1,678	1,253	1,530	1,388	4,063	3,714	13,626
전남	1,278	798	1,413	3,103	4,403	3,797	14,792
경북	3,317	2,058	3,985	7,610	10,923	10,536	38,429
경남	1,411	1,088	2,681	921	2,238	9,175	17,514
제주	644	813	1,110	1,451	1,422	1,582	7,022
합계	21,397	15,107	37,261	63,989	79,278	91,162	308,194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